성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
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5년 1월 일
발 의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○ 「지방세기본법」 일부개정(법률 제12152호, 2014. 1. 1.)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“공탁 또는 군금고 예탁”을 “군금고 예탁”으로 개정(안 제15조)

※ 채권 소멸시효(10년)로 교부할 금전이 군 금고에 귀속될 수 있도록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『지방세기본법』 제72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다. 기타사항

(1) 입법예고 : 2014. 11. 26. ~ 2014. 12. 16(20일간)

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5조의 제목 “(공탁 등)”을 “(교부금전의 예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“공탁하거나 또는 군금고”를 “군 금고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공탁 등)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군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. 다만, 군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 여야 한다.	제15조(교부금전의 예탁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군 금고---------- ----------. <단서 삭제>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